

본 책자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콘텐츠를 올바르게 이용하고 함께 누리는 반듯한 저작권 문화 조성'을 의미하며, '반듯한'과 저작권 표시 '©'(저작권 Copyright, 氏, 의인화)가 합쳐진 단어로 '반드시'라는 중의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  
또한, 상징체계(BI)는 정성을 다해 만든 '창작자와 올바른 이용으로 저작권을 지킨 '이용자'가 서로를 최고라고 칭찬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콘텐츠 저작권 · 권리자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권리자편



# Contents

---

<b>Section 01</b> 저작권이란?	01. 저작물	03
	02. 저작자	06
	03.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09
	04. 저작권	11
	05.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17
	06. 저작재산권의 제한	18
	07.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21
	08. 공유저작물을 활용하여 저작물 창작	22
	09. 저작권의 등록	24
	10. 저작인접권	28
	11.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30

---

<b>Section 02</b> 저작권 행사는 어떻게 하나요?	01. 저작물 이용허락	32
	02. 컴퓨터프로그램의 임치제도	33
	03. 저작권의 양도	34
	04.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35
	05. 저작권 기증	36

---

<b>Section 03</b>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01.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	38
	02. 침해 구제	39
	03. 고소나 재판 없이 분쟁을 해결하려면?	41
	04. 저작물의 감정	45

---

<b>Section 04</b> 불법복제물 유통 방지에 대한 정책이 궁금해요!	01.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47
	02. 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의 수거 · 폐기	48
	03. 특별사법경찰	48

---

<b>Section 05</b> 저작권 유관기관은?	01. 한국저작권위원회	50
	02. 저작권신탁관리단체	51

---

<b>Section 06</b> 알아두면 좋은 저작권 Tip!		54
--	--	----

# 1. 저작물

## 01 저작물이란?<sup>1)</sup>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 정의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

➔ 학문적 가치 유무, 예술성의 고저(高低) 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초등학생이 쓴 일기, 아마추어가 촬영한 사진도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

### Q & A

원숭이가 촬영한 셀카 사진도 저작물인가요?



동물이 촬영한 사진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숭이가 창작성 있게 사진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02 저작물의 예시<sup>2)</sup>



• 소설 · 시 · 논문 · 강연 · 연설 · 각본 등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 · 무연극 등 연극저작물

• 회화 · 서예 · 조각 · 판화 · 공예 · 응용미술저작물 등 미술저작물

• 건축물 ·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 영상저작물

• 지도 · 도표 · 설계도 · 약도 · 모형 등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예시에 없더라도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면 모두 보호 가능

### Q & A

아이돌 그룹의 안무, 컴퓨터 게임, UCC 등은 저작물의 예시에 없으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저작권법 제4조는 어디까지나 예시 조항이기 때문에, 동 조에서 열거하지 않았다고 하여 저작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예시에 없더라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라면 무엇이든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2) 저작권법 제4조

# 저작권 이란?

## Section 01

Q & A

기발한 판매 전략, 제품 포장 방식 등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나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은 소설·음악·영화·미술 등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물입니다. 따라서 판매 전략·제품명·포장 방식·제품 컨셉 등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Q & A

SNS에 올린 짧은 글도 저작물이 될 수 있나요?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저작물로 보고 있으므로, SNS에 올린 글이라고 하더라도 창작성만 있다면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짧은 글이라면 창작성이 반영될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Q & A

내가 만든 제품볶음을 촬영하여 블로그에 올렸는데, 다른 사람이 무단 이용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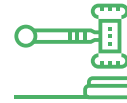
촬영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선정, 구도 및 각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사진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물건 등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촬영한 사진이라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제품볶음만을 충실하게 촬영한 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 & A

내가 작사한 노래 제목을 다른 사람이 책 제목으로 했는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저작물의 제호(제명 등)는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저작물의 제호 중에는 창작성이 돋보이는 특색있는 것들도 있으나, 대부분의 판례는 제호만으로는 창작성을 갖추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작사한 노래와 동일한 제목의 책이 나왔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0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sup>3)</sup>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법률·조약·고시·공고·법원의 판결 등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 시세 등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 언제·누가·무엇을·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건사고 기사 등
  - ➔ 법률·조약·고시·법원의 판결·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

Q & A

뉴스기사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는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특정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면서 기자의 생각(예컨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예상되는 문제점·해결 방안 등)이 기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A

저작물성 판단은 누가 하나요?



저작물성 여부를 행정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쓴 글, 내가 그린 그림이 저작물인지 여부는 법원에서만 판단 가능합니다.

3) 저작권법 제7조

### 이 저작자란?<sup>4)</sup>



• 정의 : 저작물을 창작한 자

➔ 저작물을 실제 창작한 자가 저작자가 되기 때문에, ▲저작물 창작을 위한 아이디어·힌트·소재 등을 제공한 사람, ▲자료조사를 돕거나 창작활동에 조언을 한 사람, ▲저작물 창작을 의뢰하거나 비용을 지급한 사람 등은 저작자라고 보기 어려움

#### Q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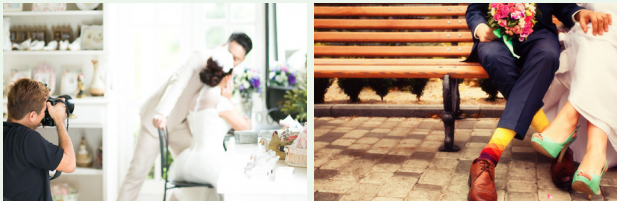
**어떤 기관으로부터 3천만원짜리 용역을 수주했습니다. 결과물의 저작권은 수행자와 발주처 중 누가 갖게 되나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로 보기 때문에, 비용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수행자가 저작자가 됩니다. 발주처는 별도의 저작권 양도 계약을 통해 저작권을 양도받는 경우에만 저작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 Q & A

**사진관에서 웨딩촬영을 할 경우, 저작권자는 사진사인가요? 사진 촬영을 의뢰한 사람인가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 사진을 촬영한 사진사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제35조제4항)에서는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진사가 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사진 촬영 의뢰자(사진에 찍힌 사람)의 동의 없이 사진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저작권법 제2조제2호

### 02 업무상저작물<sup>5)</sup>



• 법인·단체 등의 사용자가 기획하고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적으로 작성하는 저작물

• 업무상저작물의 성립 요건

1. 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 작성을 기획하였을 것
2.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것
3. 업무상 작성하였을 것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5.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직원 개인이 아닌 '법인등'이 됨

- 예컨대, 공무원이 업무상 작성한 홍보물·백서 등의 저작자는 국가가 되며, 신문기자가 작성한 신문기사 및 업무상 촬영한 사진 등의 저작자는 신문사가 됨

#### Q & A

**회사에서 홍보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근무 당시 작성했던 자료들을 엮어 개인적으로 책을 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홍보 담당자가 업무로 사보 제작을 했다면,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서 담당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하지 않는 한 해당 회사가 저작권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중 내가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퇴사 후 이를 회사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저작권법 제2조제31호, 제9조

### 03 공동저작물<sup>6)</sup>



- 정의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
    - ➔ 예컨대, A가 작성한 초벌 연극 대본을 B가 수정·보완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연극 대본을 완성한 경우<sup>7)</sup>
  - 권리 행사 :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저작권 행사 불가
    - ➔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이용허락·양도·출판권 설정 등은 효력이 없음
  - 이익 배분 :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특약이 없다면 공동저작자가 개별적으로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
    - ➔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
  - 침해 구제 : 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없어도 단독으로 손해배상청구, 침해정지 청구, 형사 고소 등 가능<sup>8)</sup>
- ※ 결합저작물 : 창작에 여러 사람이 관여하여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되나, 공동저작물과 달리 창작에 관여한 저작자 사이에 공동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각자의 창작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 가능'한 저작물
- ➔ 예컨대, 그림책의 경우 삽화와 스토리로, 음악의 경우 악곡과 가사로 각각 분리하여 이용 가능하므로, 공동저작물이 아닌 결합저작물로 봄

#### Q & A

#### 결합저작물의 저작권자들도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자들과 같이 권리행사를 공동으로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저작물과 달리, 결합저작물은 각각 별개의 저작물로 보기 때문에, 권리 행사·구제 등 각자 하게 됩니다.

6) 저작권법 제2조제21호, 제15조, 제48조

7)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참조

8) 저작권법 제129조

## 3.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 01 목적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4.4월 저작권 관련 공모전에서 저작자로서의 응모자와 이용자로서의 공모전 주최 사이의 권리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양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공모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마련

### 02 적용 범위

-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은 공모전에 출품되는 모든 응모작(저작물)에 적용됨
  - 다만, 저작물이 아닌 공모전(상품명 공모전·슬로건 공모전 등 아이디어 공모전)은 제외됨

### 03 저작권 귀속



-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저작권재산권·저작권인격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됨
  - 따라서 공모전에서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 공모전 주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응모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 경우 저작권자에게 그 이용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Q & A

#### 정당한 보상액은 어디에서 정해주나요?

보상액을 정해주는 기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보상액은 거래 관행 및 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 주최측에서 정하게 되며, 주최가 공모전에 투자한 비용과 응모자가 공모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점들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저작권재산권 양도가 부득이한 경우<sup>9)</sup>에는 예외적으로 저작권재산권이 공모전의 주최측에 귀속되도록 하되, 이 경우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http://www.mcst.go.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9) ▲저작권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만으로는 저작물의 완전한 이용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재산권의 이용이 오랜 기간 동안 요구되는 경우, ▲하나의 저작물에 여러 사람의 저작권이 관련되어 권리 행사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Q & A**

○○공모전 요강을 보니, 응모만하면 무조건 주최측에 저작권이 귀속되고 상금도 전혀 없습니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데, 불공정성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14년 8월 공정위에서는 공공기관·민간기업 등 공모전 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저작권 귀속·이용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Q & A**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강제력)이 있나요?**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주최측에 저작권이 귀속되도록 했다고 하여 주최측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약관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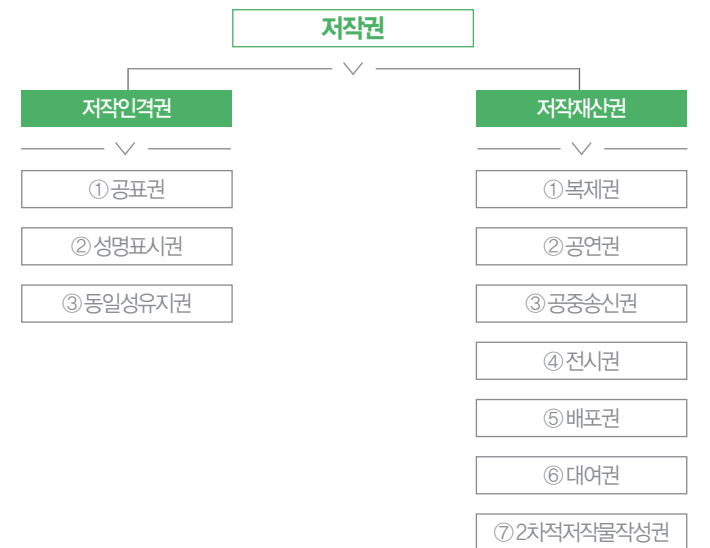


# 4. 저작권

## 이 저작권이란?



-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 '저작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로 보이지만, 실제 여러 가지 권리로 구성되어 있는 '권리의 다발'로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됨
- 저작인격권 :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3종류로 구성됨
- 저작재산권 :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로, 7종류로 구성됨



## 02 저작인격권의 종류

- ① **공표권** : 저작자가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sup>10)</sup>
- ➔ 예컨대, 친구가 우리집에 놀러왔다가 책상위에 있는 내 시를 보고 허락 없이 친구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면 공표권 침해 주장 가능
- ② **성명표시권** : 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실명, 예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sup>11)</sup>
- ➔ 예컨대, 내가 쓴 소설을 출판사에서 발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저자로 표기할 경우 성명표시권 침해 주장 가능

10) 저작권법 제2조제25호, 제11조

11) 저작권법 제12조

③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 등이 저작자의 의사와 달리 변경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sup>12)</sup>

➔ 예컨대, 내 그림의 배경색을 변경하거나 내 소설의 스토리 결말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수정할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 주장 가능

Q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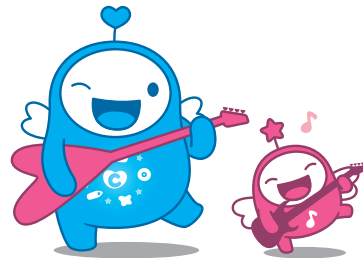
출판사에서 내 소설의 오타자 및 비문 등을 일부 수정했는데, 이 경우도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의사와 달리 저작물을 변경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오타자 또는 비문 수정 등은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는 저작물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 주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Q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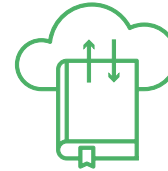
음반기획사에서 전문가를 투입하여 내가 작곡한 음악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예술적 가치가 높아졌으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 주장이 어려울까요?

고쳐진 내용, 형식, 제호 등이 실사 원래의 것보다 좋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동의 없는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술적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 또한 예외는 아니므로, 동일성유지권이 침해 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큼니다.



12) 저작권법 제13조

03 저작재산권의 종류



①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다운로드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권리이며, 건축물의 경우 건축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권리가 포함됨<sup>3)</sup>

➔ 예컨대, 내가 만든 음악·시·그림 등을 다른 사람이 무단 복제할 경우 복제권 침해 주장 가능

② 공연권 :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이나 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하는 권리이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 제외)이 포함됨<sup>4)</sup>

➔ 예컨대,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든 음악이나 시를 허락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틀거나 읽는 경우 공연권 침해 주장 가능

③ 공중송신권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sup>5)</sup>로, 방송권·전송권·디지털음성송신권 등으로 구분됨

- 방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sup>6)</sup>

➔ 예컨대, 내가 만든 동영상을 방송사에서 무단으로 방송하는 경우 복제권 및 방송권 침해 주장 가능

- 전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 및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이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함<sup>7)</sup>

➔ 예컨대, 내가 촬영한 사진 등을 무단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퍼가는) 경우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 주장 가능  
다만, 내가 촬영한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하면서 퍼가도 좋다는 내용을 함께 게시한 경우 저작권법상 이용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침해 주장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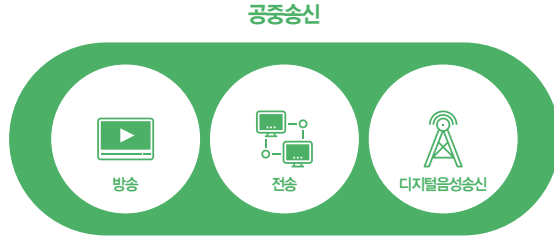
- 디지털음성송신권 :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을 송신할 권리(전송 제외)<sup>8)</sup>

➔ 예컨대, 내가 만든 음악을 허락 없이 실시간 웹캐스팅 개인 음악방송에 이용할 경우 디지털음성송신권 침해 주장 가능

13) 저작권법 제2조제22호, 제16조  
14) 저작권법 제2조제3호, 제17조  
15) 저작권법 제2조제7호, 제18조  
16) 저작권법 제2조제8호  
17) 저작권법 제2조10호  
18) 저작권법 제2조제11호



※ 공중송신 개념도



- ④ 전시권 : 미술·사진 및 건축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일반 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할 권리<sup>19)</sup>
  - ➔ 예컨대, 내가 그린 그림을 허락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전시할 경우 전시권 침해 주장 가능
- ⑤ 배포권 : 저작물의 원작품 혹은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일반 공중에게 양도 혹은 대여할 권리<sup>20)</sup>
  - ➔ 예컨대, 내가 만든 음반이나 책을 무단 복제하여 배포할 경우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 주장 가능
- ⑥ 대여권 :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sup>21)</sup>
  - 다만, 대여권은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용 컴퓨터프로그램에만 적용되므로, 도서나 영화 등을 대여하는 행위에는 대여권이 미치지 않음
  - ➔ 예컨대, 음악 CD나 컴퓨터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대여하는 경우 대여권 침해 주장 가능
- ⑦ 2차적저작물작성권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sup>22)</sup>
  - ➔ 예컨대, 내가 쓴 소설을 허락 없이 번역하거나 영화로 만들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주장 가능

Q & A

모든 저작물에는 동일하게 저작권격권과 저작재산권이 부여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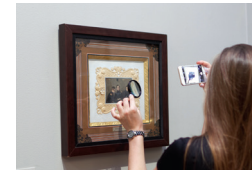
네 맞습니다. 저작권격권과 저작재산권은 모든 저작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초등학교생이 그린 그림보다 전문 화가가 그린 그림이 예술적 가치가 크다고 하여 더욱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19) 저작권법 제19조  
 20) 저작권법 제23조제23호, 제20조  
 21) 저작권법 제21조  
 22) 저작권법 제5조, 제22조

Q & A

내가 촬영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 다른 사람이 퍼갔습니다. 어떤 권리 주장이 가능한가요?

내 홈페이지 게시 사진을 다른 사람이 퍼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컴퓨터에 저작물을 복제해야 하고, 이를 많은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공중송신 중 전송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 A

그림을 있는 그대로 촬영했는데, 해당 그림 사진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그림을 있는 그대로 촬영할 경우, 촬영자의 창작성이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진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촬영한 사진을 이용할 경우 오히려 해당 그림에 대한 복제권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 A

외국드라마에 자막을 달았습니다. 원권리자 허락 없이 단 자막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자막을 다는 행위(번역)는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작성행위로 볼 수 있으며, 자막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물 저작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없어도 발생하게 됩니다. 즉, 원권리자 허락 없이 자막을 달았더라도, 번역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번역을 한 행위가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번역자가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Q & A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외에는 주장할 수 없나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에게 공표권·성명표시권 등의 저작인격권과, 복제권·배포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작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부여된 권리에 대해서만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저작자에게 청취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청취할 경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 04 저작권의 발생



-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이나 납본 등의 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함(무방식주의)
- ➔ 예컨대, 새벽에 집에서 노래를 만들었다면, 노래를 만든 순간 저작권은 발생

#### Q & A

**저작물 창작 시점을 창작자 외에는 알 수 없으므로, 어제 만든 저작물을 10년 전에 만들었다고 주장해도 되나요?**

저작물이 등록되지 않는 한, 국가를 비롯하여 외부에서 해당 저작물의 창작 시점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창작 시점이 문제되는 경우(예컨대, 어제 내가 만든 저작물과 유사한 저작물을 1년전에 A가 만들었고, A가 나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내가 A보다 먼저 만들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제 만든 저작물을 10년 전에 만든 것이라고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 Q & A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하면, 국내 모든 저작물 현황을 알 수 있나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므로, 국가 등에서 저작권 발생 사실 · 창작 시점 · 진정한 권리자 등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밤 집에서 그림을 그릴 경우 그리는 순간 저작권이 발생하는데, 국가에서 나를 일일이 감시 하지 않는 한 저작물이 창작되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 수 없겠죠? 다만 저작물을 등록한 경우, 등록된 저작물 현황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인 한국저작권위원회(02-2669-0265~0267)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 5.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 이 취지

- 영상저작물은 원저작자 · 실연자 · 감독 · 촬영자 · 연출자와 영상제작자 등 다수 참여
-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및 유통 등을 위해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02 영상저작물 특례<sup>23)</sup>



- 저작물을 영상화할 경우 허락된 범위 :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권리를 포함해 허락한 것으로 추정
- ➔ 방송 드라마에 음악 삽입을 허락했다면 해당 드라마를 방송하는 것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며, 내 소설을 영화화하는 것에 허락했다면 소설을 각색하는 것도 허락한 것으로 추정
- 독점적 이용허락 추정 :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단순한 이용허락이 아닌 독점적인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며, 영상저작물 제작자에게 5년간 독점권 부여
- ➔ 내 소설을 영화화하도록 A에게 허락했다면, 특약이 없는 한 향후 5년간은 다른 사람에게 허락 불가
- 스태프 등의 저작권 양도 추정 :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한 것을 약정한 자의 저작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
- ➔ 영상 제작에 참여한 촬영감독 · 미술감독 등 스태프의 저작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어, 개별적으로 저작권 행사 불가
- 이 경우 양도 대상은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저작재산권에 한정되므로,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유보
- ➔ 예컨대, 영화 엔딩크레딧에 스태프 · 촬영감독 · 미술감독 등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스태프 등에게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이 있기 때문임

23) 저작권법 제99조 및 제100조

-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영상화하도록 허락한 경우 영상제작자에게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권리 행사 가능
- 실연자의 저작권 양도 추정 : 실연자의 경우,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데 필요한 복제권·배포권·방송권 및 전송권에 한함

**Q & A**

**영화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인데, 해당 영화에 대한 저작권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것인가?**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 및 이용을 위해 저작권법에서는 영상물 제작에 협력할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스태프 등의 저작재산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스태프 등 100명이 참여한 영화에 대해 각각 권리 행사를 한다면, 제3자가 해당 영화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00명에게 모두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화의 이용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스태프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내용을 넣지 않는 한, 개별적인 권리 행사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작인격권은 양도의 대상이 아니므로,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영화 엔딩크레딧에 스태프 등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성명 표시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6. 저작재산권의 제한

### 이

####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란?

-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임. 다만, 직·간접적인 사회의 도움을 받아 저작물이 창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권리자의 독점을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맞지 않으며, 문화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음

## 02

### 저작재산권이 제한 되는 경우

• 일반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내용
제23조	재판절차, 입법·행정 자료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제24조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법정·국회·지방의회에서의 진술등의 이용
제24조의 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5조	교과용 도서 게재,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30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	도서관 등에 보관된 자료의 복제 등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에 의한 복제 등
제33조의 2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수화 변환 등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자체방송을 위한 일시적 녹음·녹화
제35조	미술저작물 등의 일정한 장소에서의 전시 또는 복제
제35조의 2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제35조의 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내용	
제1호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한 복제	
제2호	학교 교육 목적 등을 위한 복제 또는 배포	
제101조의 3 제1항	제3호	교과용 도서 게재
	제4호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제5호	입학시험 기타 검정 목적의 복제 또는 배포
	제6호	프로그램 기능의 조사·시험 목적의 복제

## Q &amp; A

**출판사에서 내 시를 허락 없이 교과서에 게재했는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저작권법(제25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하고,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허락 없이 교과서에 저작물을 게재할 경우, 저작재산권은 제한되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Q &amp; A

**내 그림을 무단 이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더니, 제28조에 따른 인용에 해당하여 합법이라고 합니다.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저작물성,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해당 여부, 저작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만 판단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만 침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 Q &amp; A

**국가로부터 수주받아 용역(홍보물 제작)을 수행하고, 용역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국가에 양도했습니다. 우연히 교보문고에서 내가 제작한 홍보물을 민간 출판사에서 판매하는 것을 봤는데, 저작권법상 문제 없나요?**

저작권법(제24조의2)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가 안전보장 관련 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 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건과 같이, 계약을 통해 저작재산권 전부를 국가에 양도한 경우 용역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자는 국가이므로, 상기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민들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7.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보호기간<sup>24)</sup>

- 원칙 :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sup>25)</sup>
  -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 업무상저작물 : 공표한 때로부터 70년
  - 영상저작물 : 공표한 때로부터 70년
  - 공동저작물 :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
  - 보호기간의 기산 :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공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함
- 예컨대, 저작자가 2000년에 사망할 경우, 보호기간은 2070.12.31.까지임 (2001.1.1. ~ 2070.12.31)

## Q &amp; A

**보호기간이 경과한 저작물은 상업적 이용도 가능한가요?**

보호기간이 경과한 저작물은 더 이상 저작권법에서 보호하지 않으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상업적 이용도 가능합니다.

## Q &amp; A

**보호기간이 경과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고 싶은데, 저작물별 보호기간은 국가에서 관리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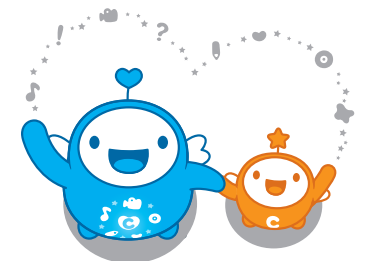
저작권은 산업재산권(특허 등)과 달리, 등록이 권리 발생의 요건이 아니므로, 등록되지 않은 저작물도 많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저작물을 모두 국가에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기간 역시 국가에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보호기간이 경과한 저작물은 공유마당 (<http://gongu.copyright.or.kr>)에서 확인하거나 직접 저작자 사망 연도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4) 저작권법 제39조 내지 제44조

25) 보호기간에 대한 우리나라 입법  
- (1957년 제정법) 생존기간 및 사후 30년

- (1986년 개정법)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 (1987.7.1. 시행)

- (2011년 개정법)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 (2013.7.1 시행)



### Q & A

####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하는데, 모든 저작물이 연장 대상인가요?

종전 법에서는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보호하였으나, 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보호기간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개정법이 시행된 2013년 7월 1일 당시 보호기간이 살아있어야 하므로, 1962년 이전 사망자의 저작물은 연장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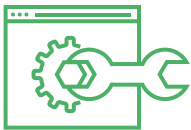
※ 헤르만헤세 : 1962년 사망

- 보호기간 : 1963.1.1~2012.12.31
- 대표작품 : 데미안, 유리알 유희, 수레바퀴 밑에서 등

※ 염상섭 : 1963년 사망

- 보호기간 : 1964.1.1~ 2033.12.31.
- 대표작품 : 만세전, 삼대, 표본실의 청개구리 등

## 8. 공유저작물을 활용하여 저작물 창작



•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하므로 보호기간이 경과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기증저작물 · 자유이용허락표시저작물 · 공공누리표시저작물은 권리자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 민요를 활용하여 가요를 만든다거나 공공누리를 부착하여 자유이용을 허용한 사진을 영상물에 삽입하는 행위 등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창작행위는 권리자 허락 없이 가능

※ 공유저작물

- 만료저작물 : 저작권 보호기간이 경과하여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 기증저작물 : 저작권자가 국가에 권리를 기증하여, 기증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저작물

- 자유이용허락표시저작물(CCL) : 저작권자가 스스로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조건을 붙이고 해당 조건을 준수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물

- 공공누리표시저작물(KOGL)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에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공공누리 표시(KOGL)가 적용된 저작물

#### •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 공유마당(<http://gongu.copyright.or.kr>)



#### • 공공저작물 포털사이트 공공누리(<http://www.kogl.or.kr>)



## 01 저작권 등록이란?

26) 저작권법 제53조 내지 제55조의2

-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과 권리변동 등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

## 02 등록의 효력



-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므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예컨대, 새벽에 집에서 노래를 만들었다면, 노래를 만든 순간 저작권 발생. 다만, 등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

1. **추정력<sup>27)</sup>** :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법률상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므로, 저작권 침해 분쟁 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저작권을 등록한 자가 저작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역으로 입증해야 함
2. **대항력<sup>28)</sup>** :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출판권을 설정받은 사실을 등록한 경우, 나중에 이중 양도 혹은 출판권 설정이 발생하더라도 등록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 가능
3. **법정손해배상 청구<sup>29)</sup>** 요건 :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 저작물당 1천만원이하(영리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실손해 입증의 어려움 해소

27) 저작권법 제53조  
28) 저작권법 제54조  
29) 저작권법 제125의2

## 03 등록 절차



### • 제출 서류

1. 저작권등록신청서 및 명세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작등본 등)
4. 저작자 목록(별지 제19호 서식 / 저작자·상속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정)
5. 저작물 목록(별지 제20호 서식 /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 처리 기간 : 신청일로부터 4일

- 심사 방식 : 구비 서류를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 신청물이 최소한의 저작물인지에 대한 형식 심사 진행

※ 저작권 등록이 권리 발생의 요건은 아니므로, 창작성의 정도 및 저작권 귀속관계 등에 대한 실질 심사는 하지 않음

- 신청 방법 : 직접 방문<sup>30)</sup> 또는 온라인 신청<sup>31)</sup>

### • 수수료<sup>3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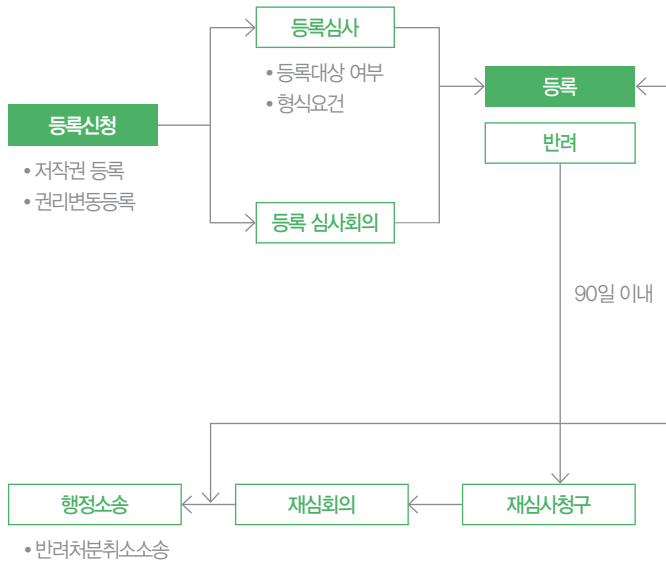
구분	수수료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신청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신청 (신고)한 경우	
1. 저작권, 저작권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신청	프로그램인 경우	6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5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프로그램 외의 경우	3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2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2. 저작권, 저작권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변동 (양도 등) 등록신청	프로그램인 경우	7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5,000원)	6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5,000원)
	프로그램 외의 경우	4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5,000원)	3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5,000원)
3. 저작권, 저작권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1,000원	800원
4. 영문 등록증의 발급 신청 (2016년 하반기 시행 예정)		3,000원	2,000원

30)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서울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타워 5층,  
서울역 11번 출구와 연결,  
02-2669-0030, 0049) 또는  
진주 본원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LH공사  
늘벗동 1층, 055-792-5265~7,  
5278)

31) www.cros.or.kr

32)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표]

• 저작권 등록 절차도



Q & A

저작권 등록은 어디에서 하나요?

현재 저작권 등록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02-2669-0265~0267)에 문의하시면 등록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A

다른 사람 저작물을 내가 먼저 등록하면, 내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인가요?

저작권 등록은 권리 발생의 요건이 아니므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가 먼저 등록했다고 해서 내가 저작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위로 등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절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 저작물로 등록해서는 안되겠죠?

Q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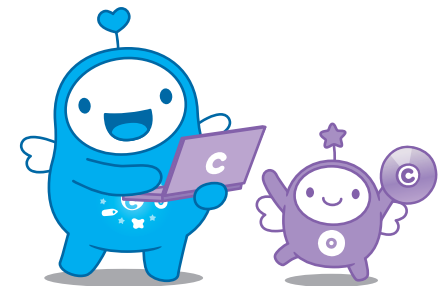
저작권 등록 후 추가 비용은 없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할 경우, 수수료는 음악·영화·소설 등 일반 저작물 3만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6만원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면허세 별도). 온라인 등록시스템(www.cros.or.kr)을 이용할 경우 신청 1건마다 1만원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권리 변동 등의 사항'을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추가되는 비용은 일절 없으며, 한번 등록하면 보호기간(저작자 사후 70년) 동안 등록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Q & A

저작권법상 납본은 의무사항이 아닌데, 도서관에는 왜 납본을 하는 것 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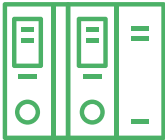
도서관자료의 납본은 자료의 수집 및 이용을 위해 '도서관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즉, '저작권법'과는 관련이 없으며, 도서관에 납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01 저작권접권이란?

-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있어서 자본 투자 또는 창의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 02 저작권접권자의 종류



-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또는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  
- 예컨대, 배우·가수·연주자·지휘자 등
- **음반제작자** :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 예컨대, SM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 등
- **방송사업자** :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  
- 예컨대, KBS·MBC·SBS 등

### Q & A

#### 아이유의 '좋은날'은 어떤 권리자들로 구성되나요?

좋은날을 만든 '작사가', '작곡가'는 "저작권자"가 됩니다.  
또한, 좋은날을 노래한 '가수 아이유'와 '연주자'는 "실연자"가 되며, 아이유의 음반을 기획·제작한 '음반사'는 "음반제작자"가 됩니다.

## 03 저작권접권자의 권리

- **실연자<sup>33)</sup>**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생실연)공연권, (생실연)방송권, 전송권, 상업용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상업용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
- **음반제작자<sup>34)</sup>**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상업용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상업용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
- **방송사업자<sup>35)</sup>** :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

33) 저작권법 제66조 내지 제77조  
34) 저작권법 제78조 내지 제83조의2  
35) 저작권법 제84조 내지 제85조의2

## 04 저작권접권의 보호기간<sup>36)</sup>

36) 저작권법 제86조

- **실연** : 실연을 한 때로부터 70년
- **음반** :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음 매 처음 음반에 고정할 때 권리 발생)
- **방송** :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

## 05 저작권접권의 제한·양도 등<sup>37)</sup>

-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과 유사하게 저작권접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저작권접권의 양도·이용허락·권리 소멸·등록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과 동일하게 규정

### Q & A

#### 베토벤의 운명을 연주하여 CD로 제작했습니다. 운명에 대한 저작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가요?

음악 CD에는 저작권,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공존해 있지만 이 세 가지 권리는 각각 다른 권리자가 행사하게 되므로, 저작권이 소멸하였다고 하여 저작권접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연을 한 때로부터 70년간 실연자의 권리를,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간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7) 저작권법 제87조 내지 제90조



# 11.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꼭꼭 저작권 : 권리자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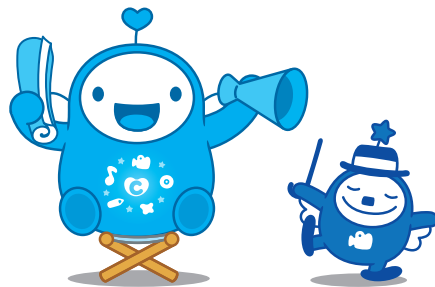
## 01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의 요건<sup>38)</sup>

1. 편집물이어야 함
2.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것이어야 함
3.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함

38) 저작권법 제2조제19호

## 02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제한

-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sup>39)</sup>를 말함
- 부여되는 권리 :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sup>40)</sup>
- 권리 제한 :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준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양도·이용 허락·권리 소멸·등록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과 동일하게 규정
- 보호기간 :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5년간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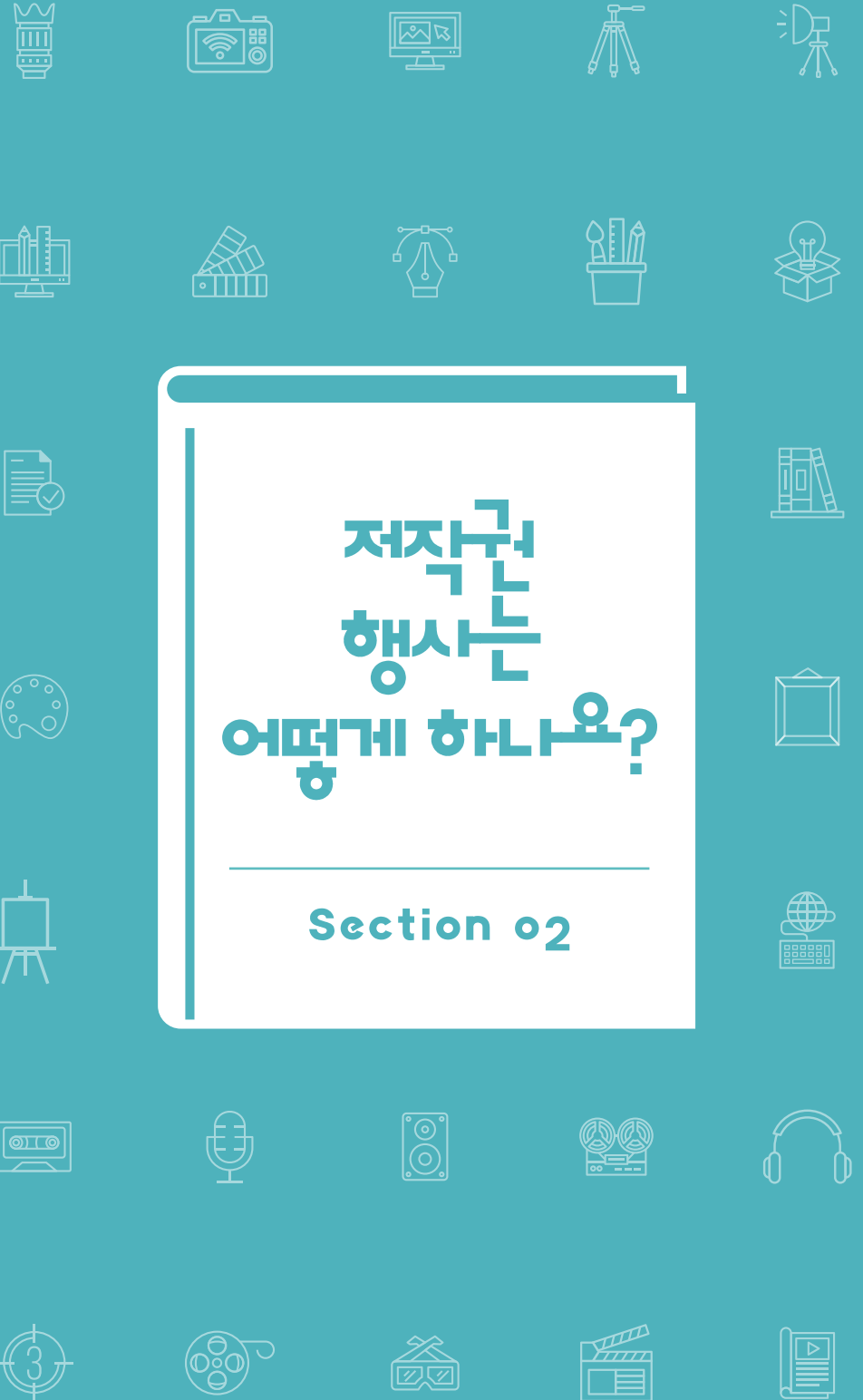
39) 저작권법 제2조제20호

40) 저작권법 제93조

**저작권  
행사는  
어떻게 하나요?**

---

Section 02



# 1. 저작물 이용허락

꼭꼭 저작권 : 권리자편



- 저작재산권은 배타적인 권리이므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반드시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함
- ➔ 저작물 이용 원칙 : 선허락 후이용
- 이용허락을 하더라도 저작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있으며, 이용허락 방식에는 독점적 이용허락(1인에게만 허락)과 비독점적 이용허락(다수에게 허락)이 있음

## Q & A

### 내 저작물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공유마당(<http://gongu.copyright.or.kr>)의 나눔N 코너에서 내 저작물에 CCL을 적용하여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적용하면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의사를 일일이 묻지 않더라도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쉽게 알 수 있어 이용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CCL은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로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저작물의 이용방법 및 조건을 규격화하여 몇 가지 표준 라이선스를 정한 것입니다. 먼저 모든 사람이 아무런 조건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싶은 경우 'CC0(CC Zero)' 또는 '⑥'로 표시합니다.

내 이름을 표시하도록 하거나 비영리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붙이고 싶은 경우, 다음과 같이 4가지 이용조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이용조건에 맞게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① 저작자 표시 조건 : 이 표시는 저작자를 표시해야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⑤ 비영리 조건 : 이 표시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저작물을 이용해야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④ 변경금지 조건 : 이 표시는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해서 2차적저작물을 창작할 수 없습니다.
4. ② 동일조건변경허락 조건 : 이 표시는 2차적저작물 창작은 허용하지만 창작한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 Q & A

### 내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고 싶은데, 이용료는 어떻게 정하면 되나요?

저작권은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작물 이용 허락의 대가(이용료)를 국가에서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마트의 물건 또는 부동산의 가격을 국가에서 정해 주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저작권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저작권료를 정하게 되며, 개인 의사에 따라 무료로 이용 허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 2. 컴퓨터프로그램의 임치제도<sup>41)</sup>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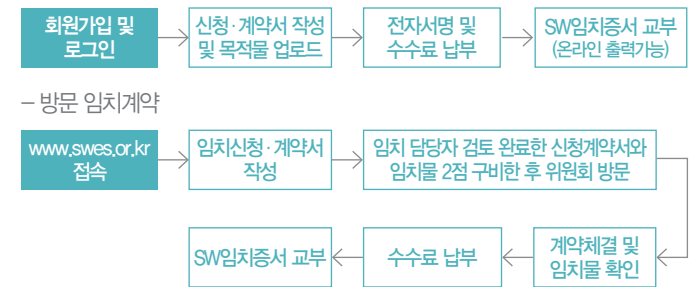
- 취지 :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임치하여 프로그램 개발자 등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정적인 프로그램 이용을 보장 하는 제도
-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사용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해 프로그램을 임치하고, 저작권자의 폐업·파산·자연재해 등 계약 상 교부 조건이 발생할 경우 이용권자에게 임치된 프로그램을 교부

### • 임치대상물 : 소스프로그램 및 관련 기술자료 일체

- (SW 분야) 소스프로그램, 오브젝트프로그램, 실행프로그램, 설계서, 매뉴얼, 유지관리자료, 개발기술자 정보 등
- (IT 분야) 설계도, 회로도, 데이터베이스, 핵심 기술자료가 포함된 SW 및 문서 등

### • 임치절차

- 온라인 임치계약



- 임치 관련 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02-2669-0032)

## Q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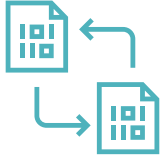
### SW임치물은 어떤 방법으로 안전하게 보관되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SW임치 전용금고를 설치하여 SW임치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며, 담당자 이외 제3자의 출입통제는 물론 감시카메라를 작동하여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임치물 보관소는 내화 특수 철판으로 설계되어 화재 및 외부 침입으로부터 완벽히 차단되고 있으며, 외부 사설경비 업체를 통해 담당자 부재 시에도 임치물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41) 저작권법 제101조의7

### 3. 저작권의 양도

꼭꼭 저작권 : 권리자편



- **저작인격권<sup>42)</sup>**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므로, 상속이나 양도 불가능
- **저작재산권<sup>43)</sup>**은 상속 및 권리의 전부(또는 일부) 양도 가능
  -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약이 없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7종을 모두 양도하고자 한다면 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
  -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

#### Q & A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해서 음악저작물을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약이 없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도록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 : A는 B에게 저작재산권 전부(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를 양도한다.

#### Q & A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은 어떻게 다른가요?**

A가 B에게 X라는 저작물을 양도했다면, 양도가 이루어진 순간부터 X의 저작권자는 B가 됩니다. 따라서 A는 X를 양도 후 이용하고자 한다면, B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집을 만들어 매매했다면, 더 이상 그 집의 주인이 건축주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반면, A가 B에게 X라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했다면, X의 저작권자는 그대로 A이면서 B가 X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Q & A

**저작권 양도 계약서에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저작인격권도 양도의 대상이 되나요?**

저작권법 제14조에서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저작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고 명확히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관련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42)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43)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 4.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35



- **배타적발행권<sup>44)</sup>** : 저작권이라는 준물권에 기하여 저작물 이용자에게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는 권리로,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 받은 자는 모든 제3자에 대하여 해당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이용권 주장 가능
- **출판권<sup>45)</sup>** : 배타적발행권의 한 유형으로, 종이책자 형태로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는 권리
- ➔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제3자의 이용행위나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는 직접 민사소송의 원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고소권을 행사하여 민·형사상 구제 가능

#### Q & A

**출판사에게 책을 출판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용허락(복제·배포)을 하는 경우와, 출판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출판한 책의 복제본이 유통될 경우,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불법물 제작 및 유통한 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면, 출판권은 배타적 발행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구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불법물 제작 및 유통한 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로부터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Q & A

**전자책을 출판하려고 하는데, 저작권자는 출판사와 어떤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출판사는 전자책에 대해서는 배타적발행권을, 종이책에 대해서는 출판권을 설정받아야 합니다. 전자책과 종이책을 모두 출판하는 경우,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거나 하나의 계약서에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관련 사항을 모두 포함해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출판 관련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용 가능합니다.

44) 저작권법 제57조 내지 제62조

45) 저작권법 제63조 내지 제63조의2

## 5. 저작권 기증<sup>46)</sup>

꼭꼭 저작권 : 권리자편



• 저작권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저작재산권 기증 가능

• 기증 신청 서류

1. 기증 서약서
2. 자신이 해당 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기증대상물의 복제물

• 기증절차

기증 상담
접수 (내방 / 우편접수)
기증서약서 제출
서류 확인
기증증서 교부

• 기증 관련 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정보팀(055-792-0132)

### Q & A

저작권을 기증할 때 영리 목적 이용을 제한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저작권을 기증할 때 기증자는 비영리 목적에만 이용, 교육목적에만 이용 등과 같이 기증저작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증 저작물에 이용조건을 붙이는 경우 이용조건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하게 됩니다.

기증저작물에 이용조건이 있는 경우 이용자들은 '기증저작물 등 이용허락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이용 목적이 기증할 때의 조건과 맞는 경우에 이용을 승인하여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6) 저작권법 제13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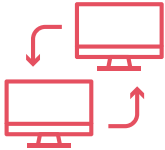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Section 03

# 1.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

## 이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sup>47)</sup>



- 취지 :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상에서는 저작물이 게시되면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되므로, 침해자에 대한 민·형사 구제에 앞서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신속하게 중단시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sup>48)</sup>가 불법복제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의무화함
  - 내용 : 권리주장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OSP에게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중단(인터넷에서 저작물의 삭제)을 요청하면, OSP는 즉시 삭제해야 함
- ※ 정당한 권리 없이, 삭제·재개 요구 시 손해배상 의무 부과  
- 이를 통한 업무 방해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Q & A

내가 만든 음악이 인터넷에 무단 유통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복제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OSP에게 서둘러 삭제 조치(복제·전송 중단 요청)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내 저작물이 불법으로 복제·전송된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OSP에게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하면 되는데,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시행규칙 별표 제40호 서식)'와 첨부서류(본인 확인 자료,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등)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Q & A

OSP에게 불법물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하면, 반드시 조치하게 되나요?

OSP는 권리주장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경우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 및 복제·전송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OSP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하게 됩니다.

47) 저작권법 제103조

48)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 예컨대, 네이버·다음 등과 같은 포털, 웹하드·P2P 사업자, 카페·홈페이지 운영자 등

## 2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sup>49)</sup>

- 내용 : 권리주장자는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해 OSP에게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OSP가 정보제공을 거절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정보제공 명령 발동 청구 가능
- ※ 권리주장자는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를 청구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9) 저작권법 제103조의3



# 2. 침해 구제

## 이 원칙

- 저작권을 침해당한 자는 민사 및 형사 구제 신청이 가능함

## 2 민사 구제<sup>50)</sup>

- 피해자가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예방, 침해정지,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치임
-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청구는 실손해배상<sup>51)</sup> 또는 법정손해배상<sup>52)</sup> 청구 가능
-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됨

50) 저작권법 제123조, 제125조 내지 제126조, 민법 제766조

51) 침해행위로 인하여 권리자가 입은 손해액만큼 배상 청구

52) 손해액에 같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 청구

### 03 형사 구제<sup>53)</sup>



- 저작권자가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를 수사당국에 소추(訴追)<sup>54)</sup>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임
- 저작권 침해되는 침해자를 안 이후 6개월 이내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소추할 수 있는 친고죄임.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당하지 않은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는 수사 당국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음
-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sup>55)</sup>를 적용
-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음

#### Q & A

**내 저작물에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를 붙이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 주장이 불가능한가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 또는 기술적인 조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표시 또는 조치 등의 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권리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Q & A

**내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자, 침해자가 불법물을 해당 사이트에서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침해가 아닌가요?**

저작물을 삭제했다고 하여, 이전에 발생한 저작물 복제·전송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53) 저작권법 제136조, 내지 제138조, 제140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54)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여 이를 수행하는 일

55)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 Q & A

**침해자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자, 사전에 경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침해자의 주장이 사실인가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에게 사전 경고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Q & A

**침해자를 안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형사고소를 할 수 없나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서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자를 안 지 1년이 경과했다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 3. 고소나 재판 없이 분쟁을 해결하려면?

### 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저작권법에서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선 및 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02 알선<sup>56)</sup>

- 저작권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의 조언과 타협 권유를 통해 당사자간 화해를 유도하는 간이분쟁해결제도

56) 저작권법 제113조의2

## 02 알선 56)



• 특성

신속성	조정제도 보다 간이한 절차진행으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짐
경제성	알선절차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무료임
비공개성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알선당사자의 비밀이 보장됨
조정신청 기회 보장	알선진행도중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신중한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고 있음

• 절차

- 저작권 관련 분쟁 당사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알선을 신청하면 위원회 위원장이 알선위원을 지정하고, 알선위원은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함
- 알선위원은 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함

• 알선 신청 방법

- 저작권 관련 분쟁 당사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 · 성명 및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알선 관련 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02-2669-0042)

## 03 조정 57)



• 저작권 및 관련 분쟁 발생시 법조계, 학계 그리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3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조정위원들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

• 특성

신속성	소송에 비해 신청 및 진행 절차가 신속 · 간편하므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처리됨 (6개월이내)
전문성	각 조정부는 법조계, 학계, 산업계를 대표하는 저작권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음 (조정부 3인으로 구성, 1인은 변호사 자격 필요)
경제성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경우 변호사 수입료, 인지대 등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해, 분쟁조정은 저렴한 비용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음(1~10만원)
비공개성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영업상 또는 개인적 비밀이 보장됨

• 절차

- 저작권 관련 분쟁 당사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 위원장이 담당조정부를 지정하고, 담당조정부는 조정당사자에게 출석요구서 발송
- 조정부장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출석 및 증명서류의 보완 ·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 · 서증 · 검증 · 감정 등의 방법으로 증거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담당조정부는 조정처리기한인 3개월 안에 1차 또는 수차의 조정기일 진행을 통해 조정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고 분쟁에 개입하여 합의를 유도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함
- 조정은 조정당사자간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성립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상대방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

※ 조정절차 흐름



• 조정 신청 방법

- 저작권 관련 분쟁 당사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 · 성명 및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피신청인 수에 상당하는 부수의 신청서 부분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고 동시에 조정비용을 위원회에 납부

• 조정 관련 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02-2669-0042)

Q & A

현재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분쟁 조정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법원에 소송중인 경우라도 조정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분쟁조정 중에 법원에 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Q & A**

**분쟁조정이 성립된 후 상대방이 합의조항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한 내용의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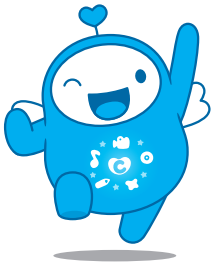
**Q & A**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방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타방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경우, 해당 조정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종결처리하게 됩니다. 즉, 소송처럼 조정 제도의 참가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알선·조정·중재제도 비교표

구분	개념	대안의 법적 구속력	효력	대안 제시
알선	알선위원이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주선함으로써, 분쟁당사자들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제도	X	민법상 화해와 동일	X
조정	중립적인 제3자적 지위를 가진 조정기구를 통해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는 제도	X	재판상 화해와 동일	O
중재	당사자의 중재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	O	확정판결과 동일	O



## 4. 저작물의 감정<sup>58)</sup>



• **감정제도** : 저작권 관련 분쟁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이 분쟁대상 저작물에 대한 동일·유사성, 완성도,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뢰할 경우, 관련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의뢰 사항을 판단한 후 그 결과를 제시하는 증거조사방법으로, 저작권법 및 소송법상 인정되는 제도임

-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분석 및 판단을 전제로 하는 사건의 경우 감정결과는 사건 해결의 결정적 판단근거로 가능하고 있음

• **감정 대상 및 신청인**

- 감정 대상 :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
- 신청인 : 법원 또는 수사기관 (프로그램의 경우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도 가능)

• **감정 관련 문의**

- 일반저작물 :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02-2669-0043)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02-2669-0045)

**Q & A**

**개인이 일반저작물 감정을 의뢰할 수는 없나요?**

일반저작물에 대한 감정요청의 주체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에 조정이 진행 중인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사건인 경우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 하에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A**

**감정 결과는 어떠한 효력이 있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는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최종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위원회의 감정결과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위원회의 감정이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에 의하여 수행되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감정결과가 도출되는 만큼 사건해결의 실질적인 열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8) 저작권법 제119조



# 1.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 01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의 책임 제한<sup>59)</sup>

59) 저작권법 제2조제30호, 제102조

- 법원에서는 OSP가 자신의 사이트 내에서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방지할 경우 방조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에서는 OSP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유형에 따른 책임 제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불법복제물 유통에 따른 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 02 특수한 유형 OSP의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화<sup>60)</sup>

60) 저작권법 제104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 웹하드·P2P 등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서비스 업체에게 불법복제물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함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정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03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제도



- 불법복제물의 무분별한 온라인 유통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OSP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정명령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시정명령<sup>61)</sup>

1.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및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2. 반복적인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3.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 • 시정권고<sup>62)</sup>

- 행정부의 시정명령이 발동되기 전에 OSP에게 자율적인 조치를 취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61) 저작권법 제133조의2

62) 저작권법 제133조의3

불법복제물  
유통방지에 대한  
정책이 궁금해요!

Section 04

## 2. 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sup>63)</sup>

63) 저작권법 제133조

- 노점·상가 등에서 불법 복제된 서적·DVD·CD·SD카드·피규어 등을 판매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사)한국저작권단체 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이를 수거하여 폐기

## 3. 특별사법경찰



- 개념 : 저작권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부여 받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저작권 경찰
- 역할 : 1. 영리·상습을 목적으로 대규모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sup>64)</sup>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조성  
2. 중소기업 정품 SW 사용 계도활동, 기업 SW 관리 컨설팅,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교육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계도·교육활동
- 구성 : 서울·부산·세종·대구·광주 등 전국에 5개 사무소를 두고, 온·오프라인상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 및 사건 송치
- 각 지역사무소 연락처 및 관할지역

- 서울사무소 : 02-725-1765, 서울·경기·인천·강원
- 부산사무소 : 051-559-3671, 부산·울산·경남
- 세종사무소 : 044-203-2093, 대전·세종·충남·충북
- 대구사무소 : 053-428-9794, 대구·경북
- 광주사무소 : 062-975-6005, 광주·전남·전북·제주

64) 매년 온라인(토렌트, 웹하드, 스트리밍 링크 등) 및 오프라인(음원 SD카드, 유명캐릭터 불법복제품 등)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기획수사 추진



# 저작권 유관기관은?

Section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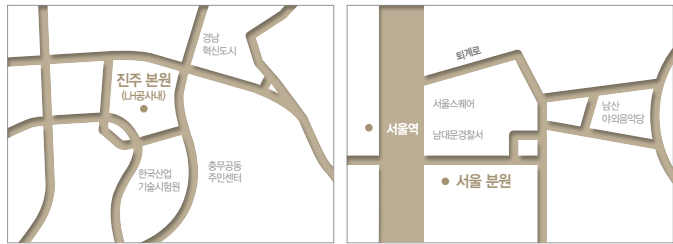




- 설립목적 : 저작권과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
- 주요 업무 : ▲ 저작권 제도 선진화, ▲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저작물 유통 및 이용 활성화 촉진, ▲ 불법복제물 유통방지 및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 ▲ 해외 진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등

1. 분쟁의 알선·조정
2.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등
3.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7. 기술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 기관 연락처
- 대표전화  
진주 본원 055) 792-0000 / 서울 본원 02) 2669-0010
- 주소  
진주 본원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3·5층(NH공사내)  
1층(종합민원실), 3층(저작권도서관, 교육장), 5층(사무실)  
서울 본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5·16층(게이트웨이타워),  
5층(종합민원실), 16층(교육장, 사무실)



진주 본원

서울 본원

- 홈페이지 : [www.copyright.or.kr](http://www.copyright.or.kr)
- 저작권 상담센터 : 1800-5455

65) 저작권법 제112조 내지 제113조



-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거나,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역할을 수행
- 권리자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번거로운 저작물관리(계약 체결, 불법활동 감시, 권리주장)에서 벗어나 창작에 전념할 수 있고, 보다 체계적으로 저작물 관리 가능
- 신탁된 저작물이 침해될 경우,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서 직접 구제행위를 통해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보호

66) 저작권법 제105조 내지 제111조

### • 저작권신탁관리단체 현황

분야	단체명	집중관리 분야	연락처	홈페이지
음악	한국음악 저작권협회	음악저작자 (작곡, 작사, 음악출판사)의 권리	02-2660-0400	<a href="http://www.komca.or.kr">www.komca.or.kr</a>
	함께하는 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자 (작곡, 작사, 음악출판사)의 권리	02-333-8766	<a href="http://www.koscap.or.kr">www.koscap.or.kr</a>
	한국음반산업협회	음반제작자의 권리	02-3270-5900	<a href="http://www.riak.or.kr">www.riak.or.kr</a>
어문	한국음악 실연자협회	음악실연자 (가수, 연주자 등)의 권리	02-745-8286	<a href="http://www.fkmp.kr">www.fkmp.kr</a>
	한국문예예술 저작권협회	어문, 연극, 영상, 미술, 사진 저작자의 권리	02-508-0440	<a href="http://www.ekosa.org">www.ekosa.org</a>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작가의 권리	02-782-1696	<a href="http://www.ktrwa.or.kr">www.ktrwa.or.kr</a>
영상	한국시나리오 작가협회	영화시나리오 작가의 권리	02-2275-0566	<a href="http://www.scenario.or.kr">www.scenario.or.kr</a>
	한국복제전송 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의 복사권, 전송권	02-2608-2800	<a href="http://www.korra.kr">www.korra.kr</a>
	한국영화 제작자협회	영상제작자의 권리	02-2267-9983	<a href="http://www.kfpa.net">www.kfpa.net</a>
방송	한국영화배급협회	영상제작자의 권리	02-3452-1001	<a href="http://www.mdak.or.kr">www.mdak.or.kr</a>
	한국방송 실연자협회	방송실연자 (탤런트, 성우 등)의 권리	02-784-7802	<a href="http://www.kbpa.or.kr">www.kbpa.or.kr</a>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자의 권리	02-2001-7114	<a href="http://www.kpf.or.kr">www.kpf.or.kr</a>
공공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02-3153-2820	<a href="http://www.kcisa.kr">www.kcisa.kr</a>

## Q &amp; A

**개인 창작자여서 일일이 이용허락을 해주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저작물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나요?**

국내에는 총 13개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있습니다. 동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권리자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권리자 대신 이용자에게 허락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작권자는 내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 각 분야별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가입하여 저작권을 신탁할 경우, 개별적으로 이용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해주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게 내 저작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Q &amp; A

**내 저작권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할 경우, 내가 개별적으로 이용 허락을 할 수 없나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내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이전됩니다. 따라서 신탁계약을 해지하기 전에는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할 수 없습니다.

## Q &amp; A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한 내 저작물이 불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직접 구제행위를 할 수 있나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 제기 권한까지 모두 신탁관리단체가 갖게 됩니다. 따라서 내 저작물이 불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발견하더라도 이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이에 대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중요한  
저작권 Tip!

Section 06

Q & A

저작권법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모든 현행법 및 연혁법을 볼 수 있습니다.

Q & A

저작권과 소유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저작권은 무형의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권리인 반면, 소유권은 자기가 소유하는 유형의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서점에서 A라는 소설을 1만원에 구입할 경우 나는 소설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소설의 저작권은 여전히 작가에게 있게 됩니다. 또한 편지의 경우, 발신인은 저작권자가 되고, 수신인은 소유권자가 됩니다.

Q & A

지식재산권, 저작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모두 같은 권리인가요?

지적인 창작물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식재산권'이 있으며, 지식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로 구분됩니다.



Q & A

저작물에 표기되어 있는 ©표시와 "All rights reserved"는 어떤 의미인가요?

©표시는 과거 저작권의 발생에 대해 방식주의(등록 등 어떤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통해 권리가 발생하는 것)를 취하고 있던 미국이 주축이 된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에 의한 것인데, ©표시는 Copyright의 첫글자입니다. 당시 UCC 조약은 저작물의 복제물에 ©기호, 저작권자의 성명, 저작물의 최초 발행연도를 표시한 경우에는 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형식을 만족시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1989년 무방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베른협약에 가입하여 외국 저작물에 대하여 무방식주의를 취하게 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그 역할이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고, 오늘날 이러한 ©표시가 저작권 법상의 보호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흔히 ©표시와 함께 "All rights reserved(모든 권리 유보)"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표기하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출처 :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38p, 한국저작권위원회)

Q & A

우리나라에서 미국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우리나라 법과 미국법 중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이용되는 나라의 법이 적용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미국영화를 상영할 경우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라 합법 여부가 달라지며, 역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 영화를 상영할 경우 미국법에 따라 합법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Q &amp; A

## 저작권 침해와 표절은 어떻게 다른가요?

저작권 침해란 권리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배포·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권리자 허락 없이 음악을 인터넷에서 공유하거나, 책을 무단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 것인양 이용하는 행위(내 논문에 다른 교수의 견해를 출처표기 없이 삽입하여 내 견해인 것처럼 하는 행위)로, 도덕적·윤리적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많으며, 표절을 직접 처벌하는 별도 법은 없습니다. 다만, 표절의 양태에 따라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표절은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보호기간이 소멸한 저명한 교수의 견해를 내 견해인양 내 논문에 넣는 경우, 음악 작곡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내 곡에 삽입한 후 작곡자의 동의를 얻어 내 이름만으로 곡을 발표하는 경우 등은 표절이라고는 볼 수 있으나,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책을 저자명까지 그대로 복제하여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나 표절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책을 무단 복제하여 배포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저자로 넣는다면 표절과 저작권 침해 모두 성립하게 됩니다.

## Q &amp; A

## 매절 계약과 같이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요?

저작권재산권은 개인의 재산권이기에 때문에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양도, 처분 등이 가능합니다. 매절 계약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불리하게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쌍방간의 합의(저작권자의 자유 의지)에 따라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저작권법에서 무효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작권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Q &amp; A

## 저작권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저작권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후술하는 '저작권 관련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 계약의 목적물(저작물)이 무엇인지, ▲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여부, ▲ 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범위(예컨대, 복제·배포만 허락하는 것인지, 복제·전송도 허락하는 것인지 등), ▲ 기간, 비용 등, ▲ 상호간의 의무 사항 등에 대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 Q &amp; A

## 참고할만한 저작권 관련 계약서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작권 관련 표준계약서 4종 및 계약서별 해설서를 마련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상부의 검색 창에 "저작권 표준계약서"를 입력하시면 검색 가능합니다. 동 계약서는 표준계약서이므로, 계약 당사자들 간에 협의를 통해 수정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계약서"를 검색하면,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영화시나리오 표준계약서 등 문화 분야의 다양한 표준계약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Q &amp; A

## 저작권 계약서에 저작권 대신 '판권'이라고 써도 되나요?

먼저, 판권의 유래는 일본의 근대지식인 福沢諭吉(후쿠자와 유키치)가 '서양사정'에서 copyright을 '장판의 면허(出版の免許)'라고 번역한 후, 1873년 동경부에 제출한 문서에서 '출판의 특권(出版の特權)'으로 수정하였고, 후에 이를 줄여 "판권(板權)"이라 하였습니다.

일본 1875년의 출판조례에서 판의 면허에 의해 성립한 도서전매권의 의미로 사용된 이래 1887 출판조례·각본양보조례·사진판권조례, 1893년 판권법으로 이어져 저작자가 갖는 독점출판권의 의미로 변화하였습니다. 1899년 일본 저작권법이 제정됨으로써 법률상 사어(死語)가 되었으나, 현재 "저작권"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는 것입니다.

판권은 현행 저작권법에 근거한 법적 용어가 아니므로, 저작권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이라고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 A

UCC 제작시 사용할 음원을 허락받고 싶은데, 권리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정허락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동 제도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법정허락 절차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800-5455)

• 법정허락 절차 □ : 신청인 수행 / ■ : 위원회 수행



Q & A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안내

직접 찾아가 저작권 교육, 상담,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 중소기업 대상

- 1인창조,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저작권 서비스 제공(교육, 법률자문, 계약서 검토, SW관리체계컨설팅 등)
- 문의전화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기반팀 055) 792-0222 or 0224

• 문화예술인 대상

- 저작권 분쟁상담, 예술인 계약서 조항 검토, 저작권 개념 및 계약상 유의사항 교육 등 저작권 서비스 제공
- \* 찾아가는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 운영
- 전문 법률상담 무료 자원, 개인 사전신청
- 문의전화 :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 1800-5455(상담)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운영팀 055)792-0216(교육)

Q & A

저작권 관련 궁금사항은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저작권 관련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법률, 침해 대응, 제도 상담 등 저작권 관련 모든 궁금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1800-5455, call@copyright.or.kr)



## 꼭꼭 저작권 : 권리자편

- 기획**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실  
박태영, 김장호, 박현성
- 글쓴이** 장진숙
- 감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  
김찬동, 박한빈, 사호진
- 발행**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발행일** 2016년 5월
- 디자인** 디자인포레버

본 책자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http://www.mcs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창작이와 나눔이

저작권 캐릭터 '창작이'와 '나눔이'는 올바른 창작활동과 이를 통해 정직한 방법으로 좋은 저작물을 나누는 모습을 어른과 어린이 캐릭터로 각각 형상화하였다.